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3940     |
| 의 퇴 인 | 용혜인의원       |
| 회 답 일 | 2025.11.20. |
| 추계번호  | 25D5886     |

#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24조(진흥원의 업무)           |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“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”을 추가함(제1항제1호의2) | 의무규정 |
|    | 안 제27조(사업수행기관의 의무)        |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에 “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”을 추가함(제1항)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안 제55조의2(사회투자계정의 설치 및 조성) | “자활지원계정”을 “사회투자계정”으로 변경함(제1항)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안 제55조의3(사회투자계정의 용도)      | 사회투자계정의 용도에 “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의 수행”을 추가함        | 의무규정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24조(진흥원의 업무)          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|    | 안 제27조(사업수행기관의 의무)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안 제55조의2(사회투자계정의 설치 및 조성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안 제55조의3(사회투자계정의 용도)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사업수행기관의 업무에 “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”을 추가하고, 자활지원계정을 “사회투자계정”으로 변경하면서 동 계정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계정 및 사업 변화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휴면예금등관리계정                     | 서민금융보완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활지원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설치근거<br>( <del>서민금융법</del> ) | 휴면예금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·운용(제39조) |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(제46조) |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(제55조의2)  |
| 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회사 출연 휴면예금 등                | 정부출연금, 금융회사 출연금 등                   | 기부금품 등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(용도)                       | 원관리자 지급<br>원관리자 찾아주기 등        | 근로자햇살론, 햇살론뱅크, 햇살론15 등              | 미소금융, 햇살론유스, 청년희망적금, 청년도약계좌 등 |

  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휴면예금등관리계정                     | 서민금융보완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변경) 사회투자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설치근거<br>( <del>서민금융법</del> ) | 휴면예금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·운용(제39조) |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(제46조) |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또는 <b>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</b> 의 원활한 수행(제55조의2) |
| 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회사 출연 휴면예금 등                | 정부출연금, 금융회사 출연금 등                   | 기부금품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(용도)                       | 원관리자 지급<br>원관리자 찾아주기 등        | 근로자햇살론, 햇살론뱅크, 햇살론15 등              | 미소금융, 햇살론유스, 청년희망적금, 청년도약계좌, <b>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</b> 등   |

자료: 서민금융진흥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,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현행법 제2조제5호<sup>1)</sup>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<sup>2)</sup>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, 그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 현황: 2020~2024년

(단위: 건, 억원)

| 구분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 2024 |
|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건수 | 129  | 141  | 122  | 129  | 124  |
| 금액 | 78.1 | 85.1 | 76.3 | 72.4 | 61.2 |

자료: 서민금융진흥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과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경우,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의 종류<sup>3)</sup>가 현행 사회적기업

- 
- 1)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 
5. "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"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  
아.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2)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조(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) 법 제2조제5호아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 
3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
- 3)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 
5의2. "사회연대경제조직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.  
가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

보다 증가하고 사업내용도 현행 신용대출사업 외에도 투자사업, 출자·출연 등<sup>4)</sup>을 하게 되어,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- 그런데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수와 사업별 지원단가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지만,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음
- 따라서 현시점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수와 지원사업별 단가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### Ⅲ. 부대의견

- 없음

---

나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

다. 「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

라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

마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

바.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28조 또는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

사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의10에 따른 소셜벤처기업

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

4)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5의3. “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
가.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사업

나.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사업

다.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 또는 출자

라.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## I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장삼열 | 김안나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|
| 장삼열 | 02-6788-4831 | jsy@na.go.kr |